

농업인 및 농업인자녀 복합교육시설

## 설계비 산출 내역서

2024.02.

서사건축사사무소

# 농업인 및 농업인자녀 복합교육시설 건립공사 설계비 산출근거

## 1.1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한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비 고	
순설계비	1. 건축 예정공사비	2,865,446,000		
	2. 건축 순공사비	2,604,950,909	예정공사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3. 설계비요율	4.575%	직선보간법 적용 / 2종보통, 중급 적용	
	4. 순설계용역비	119,171,000	2. 순공사비 x 3. 설계비요율	
추가 업무 및 기타업무	5. 각종 인증용역	(1) 녹색건축물 예비인증	-	면적 3,000㎡미만으로 해당사항 없음
		(2) 에너지절약계획서	3,000,000	에너지성능지표 제외
		(3)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	수평, 수직증축으로 해당사항 없음
		(4) 제로에너지 예비인증	-	수평, 수직증축으로 해당사항 없음
		(5)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	수평, 수직증축으로 해당사항 없음
	7. 조감도/투시도	-	순설계비(용역비에 포함)	
	8. 설계안전성 검토	-	별도 부대비로 산정	
	9. 우수유출저감대책	-	별도 부대비로 산정	
	10. 기타 추가업무	-	별도 부대비로 산정(해체계획서)	
	11. 소 계 (순용역비)	<b>122,171,000</b>	4. 순설계용역비 ~ 10. 기타추가업무 합계	
	12. 부가가치세	12,217,100	11. 소계(순용역비)의 10% 적용	
13. 손해배상보험료	619,000	4. 순설계용역비 x 실시설계요율 0.52% 적용 / 천원단위절사 <첨부2>		
<b>13. 합 계</b>	<b>135,007,000</b>	<b>일금일역삼천오백만칠천원정</b>		

## 1.2 건축사법 업무대가에 의한 설계용역비 산출요율

- 적용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2종보통, 중급)

- 손해배상보험료 산정(건축사공제조합 실시설계요율 적용 (제1종근린생활시설 / 5억이하 실시설계 요율 0.52%))

$$\begin{aligned}
 & 4.72 - (4.72 - 4.48) \times \frac{2,604,950,909 - 2,000,000,000}{3,000,000,000 - 2,000,000,000} \\
 = & 4.72 - (0.24) \times 0.605 \\
 = & 4.72 - 0.145 \\
 = & 4.574812 \approx \mathbf{4.575\%}
 \end{aligned}$$

1.3 건축설계 대가요금 [국토교통부고시 2020-635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4]

종 별	제3종(복잡)			제2종(보통)			제1종(단순)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50,000,000	12.55	10.46	8.36	11.41	9.51	7.61	10.22	8.51	6.81
100,000,000	11.48	9.56	7.65	10.43	8.69	6.95	9.38	7.82	6.25
200,000,000	9.99	8.33	6.66	9.08	7.57	6.05	8.16	6.8	5.44
300,000,000	8.68	7.23	5.78	7.88	6.57	5.26	7.08	5.9	4.72
500,000,000	7.9	6.58	5.26	7.18	5.98	4.79	6.46	5.38	4.3
1,000,000,000	7.03	5.86	4.68	6.39	5.32	4.26	5.75	4.79	3.83
2,000,000,000	6.22	5.19	4.15	5.66	4.72	3.77	5.09	4.24	3.4
3,000,000,000	5.91	4.93	3.94	5.38	4.48	3.58	4.84	4.03	3.23
5,000,000,000	5.72	4.76	3.81	5.2	4.33	3.46	4.68	3.9	3.12
10,000,000,000	5.58	4.65	3.72	5.07	4.22	3.38	4.56	3.8	3.04
20,000,000,000	5.42	4.51	3.61	4.92	4.1	3.28	4.43	3.69	2.96
30,000,000,000	5.32	4.44	3.55	4.84	4.03	3.23	4.36	3.63	2.91
50,000,000,000	5.25	4.38	3.5	4.77	3.98	3.18	4.3	3.58	2.87
100,000,000,000	5.14	4.29	3.43	4.68	3.9	3.12	4.21	3.5	2.8
200,000,000,000	5.06	4.22	3.38	4.6	3.84	3.07	4.14	3.45	2.76
300,000,000,000	5.01	4.17	3.34	4.55	3.79	3.03	4.1	3.42	2.73
500,000,000,000	4.93	4.11	3.28	4.48	3.73	2.99	4.03	3.36	2.69

\*공사비 라 함은 건축주의 공사비 예정금액(자재대포함)중 용지비,보상비,법률수수비 및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4 건축물의 종별 구분 [국토교통부고시 2020-635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3]

종 별	건축물의 종류									
2종 (보통/중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작물(굴뚝, 옹벽, 고가수조 등)</li> <li>· 단독주택</li> <li>· 공동주택</li> <li>· 제1종 근린생활시설</li> <li>· 제2종 근린생활시설</li> <li>· 판매시설</li> <li>· 장례식장</li> <li>· 교육연구시설(도서관 제외)</li> <li>· 노유자시설</li> <li>· 수련시설</li> <li>· 업무시설</li> <li>·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li> <li>· 위락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li> <li>· 창고시설(냉장, 냉동창고 포함)</li> <li>·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li> <li>·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li> <li>·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li> <li>· 분노 및 쓰레기처리시설</li> <li>· 교정 및 군사시설</li> <li>· 묘지관련시설(화장장 제외)</li> <li>· 관광휴게시설(관망탑 제외)</li> <li>· 기타 제2종 용도와 유사한 것</li> </ul>	※ 제2종 시설로서 특수구조 또는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3종을 적용							